

문서관리번호	HIHR-CD2409-011
최종 수정일	2024.09.24
수정 버전	1
문서관리담당	인사노무팀

# 현대IFC 차별 및 괴롭힘 예방 정책

2024. 9. 24

## 목차

---

1. 개요 .....	2
가. 제정목적 .....	2
나. “차별 및 괴롭힘등“의 정의 .....	2
2. 선언 .....	2
3. 관리 .....	3
가. 신고처리 .....	3
① 신고 접수채널 .....	3
② 처리절차 .....	3
나. 교육 및 확산 .....	4
다. 무관용 원칙 .....	4
라. 시정 및 인사조치 .....	4
4. 부칙 .....	4
5. 개정 이력 .....	4

## 1. 개요(Preamble)

### 가. 제정목적

현대IFC는 사업과 관련한 활동을 영위하면서 발생 가능한 직장 내 차별 및 괴롭힘, 성희롱(이하‘차별 및 괴롭힘등’이라고한다)과 관련한 이슈를 예방함과 동시에 당사의 모든 임직원들이 차별없는 동등한 대우를 받기 위해 해당 정책을 선언한다. 또한, 모든 자회사, 협작투자, 공급망 및 계약업체 등이 이를 준수할 것을 기대한다. 현대IFC는 남녀고용 평등과 일•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(이하‘남녀고용평등법’), 근로기준법, 산업안전보건법,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등 차별 및 괴롭힘과 관련한 법률을 준수한다.

### 나. “차별 및 괴롭힘등”的 정의

- “차별행위”란 합리적인 이유없이 임직원의 성별, 인종, 민족, 국적, 종교, 장애, 나이, 정치적 견해, 출신 지역, 용모등신체조건, 혼인여부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배제,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.
- “직장내 괴롭힘”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.
- “직장내성희롱”이란 사업주·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언동 또는 그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.

## 2. 선언(Declaration)

현대IFC는 차별 및 괴롭힘 등을 예방하기 위해 전체 임직원에게 이 정책의 내용을 알리고 교육하며, 이 정책의 기본적인 가치인 다양성 존중에 대한 가치 인식을 높인다. 이를 위해, 지속적인 교육활동, 신고채널 운영 등의 활동을 한다.

현대IFC는 차별 및 괴롭힘등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, 문제 발생 시 사내 규정된 절차에 따라 해결한다.

현대IFC는 전 임직원이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고 차별 및 괴롭힘 등이 발생하는 경우, 이를 해결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를 제공하며, 이러한 절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.

현대IFC는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는다. 다만, 조사 및 이와 관련된 내용을 보고 절차에 따라서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 또한, 현대IFC는 불만 사항을 보고 한 사람이나 증언한 사람이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며, 피해자 또는 증언한 사람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원을 제공한다.

현대IFC는 조사 결과가 해자로 밝혀진 자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서 인사조치를 취한다.

### 3. 관리(Management)

#### 가. 신고처리

##### ① 신고 접수채널

차별 및 괴롭힘 등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라도 그 내용을 신고할 수 있으며, 현대IFC는 신고를 받는 경우 지체없이 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방안을 강구하며 근로기준법, 남녀고용평등법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조치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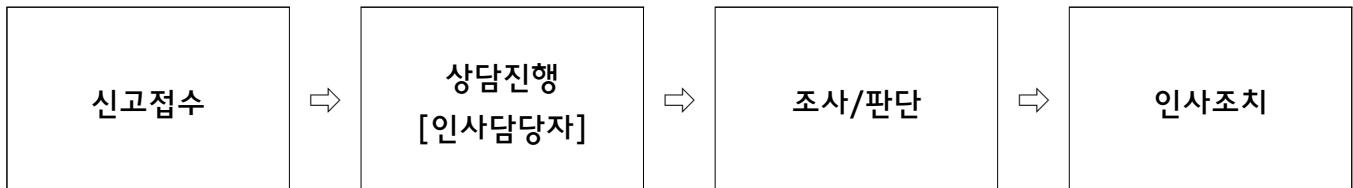
현대IFC는 차별 및 괴롭힘 등의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의 조치를 하지 않으며,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근무장소의 변경, 휴가등 적절한 조치를 실시한다.

#### 대표 신고 채널

- 부서명/담당자 : 인사노무팀 김래현 팀장
- 연락처 : 061-760-7330

##### ② 처리 절차

현대IFC는 차별 및 괴롭힘 등과 관련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 절차를 구축하고자 한다. 차별 및 괴롭힘의 피해자 또는 해당 행위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,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사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.



#### 나. 교육 및 확산

현대IFC는 임직원 대상 차별 및 괴롭힘 등의 금지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상호 존중과 존엄을 기반으로 하는 조직문화 확산에 기여한다. 차별 및 괴롭힘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, 신고처리 채널을 통해 적극 신고하도록 유도한다.

#### 다. 무관용 원칙

현대IFC는 상호존중과 존엄을 기반으로 하는 직장 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, 차별 및 괴롭힘 등에 해당하는 행위들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한다.

#### 라. 시정 및 인사조치

현대IFC는 직장에서의 모든 종류의 차별 및 괴롭힘 등 또는 기타 불법적인 타인의 권리 침해에 대해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시정 조치 및 인사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.

### 4. 부칙

본 차별 및 괴롭힘 금지 정책은 2022. 07. 11부로 제정한다.

### 5. 개정 이력

차수	제 · 개정일	주요 내용
0	2022년 7월 11일	초도 제정
1	2024년 9월 24일	문서관리번호 개정, 문서관리담당 및 신고채널 부서명 변경